

심 사 보 고 서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1
----------	-----

2019. 10. 25.(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10월 8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0월 17일

-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석영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매년 늘어나는 건강검진 수요에 맞춰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검진센터를 개보수하고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형 검진센터를 증축하고자하며, 의료원 별관동 3층 사무실을 개조한 현재 간호사 기숙사는 노후되고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증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조령산자연휴양림은 1993년 조성한 초창기 휴양림으로 당시 건축한 통나무집 형태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 우려 및 시설물 운영관리 어려움으로 이를 개축하여 특색 있는 산림 휴양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며
-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19년~22년 500ha)매입하려함
- 울량119안전센터 청사의 협소함 및 노후화,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장비 조작 및 전술훈련이 어려움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옥산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센터로의 승격 및 옥산면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옥산119지역대(면사무소 내 위치)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재산의 취득>

①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청주의료원 내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2년)
- 규 모 : 4,781.04㎡(증축 4,199.42㎡, 개·보수 581.62㎡)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50%, 도비50%)

②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번지
- 사업기간 : 2020. 1. ~ 12.
- 규 모 : 16동 514m²
- 사 업 비 : 3,300백만원(균특50%, 도비50%)

③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 위 치 :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산22-1 외 21필지
- 사업기간 : 2020. 1. ~ 12.
- 규 모 : 112ha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100%)

④ 울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2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0. ~ 2021.
- 신축규모 : 1,000m²(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543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⑤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1.
- 신축규모 : 990m²(1개동, 지상3층), 부지면적 2,000m²
- 사 업 비 : 2,530백만원(도비 100%)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곽영학)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 첫째,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의 건은

-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자는 2015년 85,450명에서 2018년 114,14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건강검진 시 시설의 불편함이 있어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강검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현재 간호사 기숙사 12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및 화장실과 샤워실의 공동사용으로 9명만 이용 중에 있으며, 의사의 경우 주변 오피스텔 9채를 임차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있어 임차비용의 절약 및 응급상황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바람직한 증축으로 판단됨.
- 다만, 건축시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원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2020년 조령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의 건은

- 현재의 휴양림 숙박시설은 목구조 통나무집으로 되어 있어 내부에 곰팡이 등으로 인해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화장실 등의 공동이용시설이 매우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불편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 16억5천만원과 도비 16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특색있는 휴양시설 확충을 통해 다시찾고 싶은 휴양림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셋째,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의 건은

- 현재 연차적 계획에 따라 2019년 30억원의 도유림을 매입하였으며, 2020년에도 30억원의 도유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도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산림부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넷째,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은

- 현재의 율량119안전센터는 1990년 1월 건축된 것으로 29년이 경과하여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율량2지구 개발사업 등 소방수요 증가와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안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율량119안전센터의 이전 신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훈련여건 개선과 안전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다섯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의 건은

- 옥산면은 오창과학단지, 옥산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주와 공공주택단지 조성으로 2,500여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 입주 및 추가건설로 소방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바 옥산119지역대를 옥산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 옥산119안전센터를 신축함으로써 재난·재해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소방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27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0월 08일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271 호
----------	---------

제출연월일 : 2019년 10월 0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매년 늘어나는 건강검진 수요에 맞춰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검진센터를 개·보수하고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형 검진센터를 증축하고자하며, 의료원 별관동 3층 사무실을 개조한 현재 간호사 기숙사는 노후되고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증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보편적 의료복지 실현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조령산자연휴양림은 1993년 조성한 초창기 휴양림으로 당시 건축한 통나무집 형태의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의 안전 우려 및 시설물 운영관리 어려움으로 이를 개축하여 특색 있는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이며
- 매년 감소되는 산림면적 확보를 통해 대단위 도유림 경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산림보존·관리 정책 실현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복지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사유토지를 연차적으로('19년~22년 500ha)매입하려함
- 율량119안전센터 청사의 협소함 및 노후화,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장비 조작 및 전술훈련이 어려움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옥산면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센터로의 승격 및 옥산면사무소 이전 계획에 따른 옥산119지역대(면사무소 내 위치)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청주의료원 내
- 사업기간 : 2020. 1. ~ 2021. 12.(2년)
- 규 모 : 4,781.04m²(증축 4,199.42m², 개·보수 581.62m²)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50%, 도비50%)

《2020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철거 및 개축》

- 위 치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번지
- 사업기간 : 2020. 1. ~ 12.
- 규 모 : 16동 514m²
- 사 업 비 : 3,300백만원(균특50%, 도비50%)

《도유림 행정재산 취득》

- 위 치 :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산22-1 외 21필지
- 사업기간 : 2020. 1. ~ 12.
- 규 모 : 112ha
- 사 업 비 : 3,000백만원(도비 100%)

《율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2번지 일원(밀레니엄타운 부지 내)
- 사업기간 : 2020. ~ 2021.
- 신축규모 : 1,000㎡(1개동, 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2,543백만원(소방안전교부세)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1.
- 신축규모 : 990㎡(1개동, 지상3층), 부지면적 2,000㎡
- 사 업 비 : 2,530백만원(도비 100%)

3.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202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	1,120,061	3,000,000				
	건물	4	7,285.04	18,372,657				
	기타							
1	토지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산22-1	785,766	1,014,831	2020	도유립 확대조성	이남주 외 2	매입
		괴산군 소수면 수리 산20	312,595	610,277	"	"	윤창호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산42	5,170	186,339	"	"	고건필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0	344	28,930	"	"	이규창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2	1,128	98,251	"	"	지병권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7-4	346	35,334	"	"	여형준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9	769	66,982	"	"	김옥녀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1	1,228	103,273	"	"	손성배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3	1,231	135,323	"	"	지병권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44	1,228	191,793	"	"	한의남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56-1	2,479	148,915	"	"	홍삼숙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0-2	377	17,664	"	"	홍의범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2-1	982	44,832	"	"	홍의범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4-3	546	23,943	"	"	김홍순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6	466	17,636	"	"	오진석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9	228	8,902	"	"	오진석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65-10	2,727	111,392	"	"	김용예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70-1	172	8,266	"	"	서수남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170-3	264	12,370	"	"	서수남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1	1,651	104,135	"	"	고건필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2	40	3,364	"	"	여형준	"		
청주시 미원면 미원리 238-3	324	27,248	"	"	고건필	"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2	토지							
	건물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청주의료원 부지 내)	4,781.04	10,000,000	2021	건강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	증축
	기타							
3	토지							
	건물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	514	3,300,000	2020	조령산자연휴양림 개축	충청북도	개축
	기타							
4	토지							
	건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2(밀레니엄타운 내)	1,000	2,542,583	2021	울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	신축
	기타							
5	토지							
	건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265	990	2,530,074	2021	옥산119안전센터 신축	-	신축
	기타							

관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